

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추진

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재단 정관 개정 추진 건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드리고자 함.

1. 추진 배경

-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6321호, 2016.9.29.) 제정에 따라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간 상생과 협력 촉진을 위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함.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내용 반영

2. 주요 개정내용

-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- 이사 정수(15인 이내)에 근로자이사 1인 포함내용 반영
- 제10조(임원의 임기)
 - 근로자이사의 연임은 근로자투표 등의 선출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며,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 종료시 근로자이사 임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임기 종료
- 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
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일부 내용 수정
 - 근로자이사의 결격사유 추가 :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해당자

-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사장 1인 2. 대표이사 1인 3. <u>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)</u> 4. 감사 2인 이내 <개정 2012. 4. 20> 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(단서신설)</p> <p>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</p> <p>③ 임기 중에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사장 1인 2. 대표이사 1인 3. <u>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근로자이사 1인을 포함한다)</u> 4. 감사 2인 이내 <개정 2012. 4. 20> <p>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u>다만, 근로자이사의 연임은 근로자투표 등의 선출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.</u></p> <p>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</p> <p>③ 임기 중에 선임직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</p> <p>④ <u>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. 미성년자·<u>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</u> 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<u>3년</u>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. 미성년자·<u>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</u> 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<u>2년</u>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. <u>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신설)</u> 7.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8. <u>근로자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 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(신설)</u> <p>②~③ 현행과 같음</p>

〈참고자료〉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,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

【근로기준법】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"사용자"라 함은 사업주,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.